

# 대한양계협회소식



## 2007년 정기총회 금년 사업계획 검토



본회 2007년 정기총회가 지난 22일 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최준구 회장을 비롯하여 대의원 198명중 1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2006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결산안, 2007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이 의결사항으로 다루어져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한편 양계산업 발전에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농림부 장관상과 유공포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관련기사 78페이지)

## 2007년도 제1회 이사회 의결사항 원안대로 처리

지난 9일 본회 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참석 27명을 비롯해 위임 6명인 가운데 2007년



도 제1회 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1호 2006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결산안, 제2호 2007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제3호 회비 및 제수입금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4호 임원퇴임 및 보선추인안, 제5호 2006년도 양계산업 발전 유공포상대상자 선정안, 제6호 업종별 분과위원 조정추인안에 대한 의결사항이 다루어져 원안대로 처리 되었으며 유공포상대상자는 요청에 따라 3명이 추가된 23명으로 변경했다.

한편 기타사항으로는 한미 FTA, AI 대응 방안 등 당면현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 산란종계 대표자 협의회 산란계자조금, 부회장 거출방안 긍정적

본회는 지난 1월 30일 산란종계 및 산란실용



계 업계 대표자 협의회를 개최하고 산란계의무 자조금 수납기관을 부화장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였다.

이날 협의회에서 참석자 전원이 산란계자조금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였으며, 특히 산란종계업계에서도 부화장이 자조금 거출기관으로 지정되는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산란계자조금 추진에 빠른 진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산란종계업계는 병아리 분양 시 판매금액에 자조금을 포함시켜 거출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산란계자조금을 거출함에 있어 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산란실용계 업계대표는 우선 전국 5만수 이상 사육농가들을 대상으로 산란계자조금 조성에 대한 동의를 받고 단계적으로 산란실용계 구입 시 자조금을 납부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홍보해 궁극적으로 모든 산란계 농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 채란분과위원회 자조금 납입 동의서 적극 협조키로

지난 5일 본회 회의실에서 채란분과위원회(위



원장 김선웅)가 개최되었다.

산란종계대표자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인 산란계 자조금의 부화장 거출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의사를 표명한 것에 의거하여 5만수이상 사육 규모의 채란농가는 동의서명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산란업계 불황타개를 위해 2004년부터 시행한 산란종계쿼터제는 실용계 분양수수 제한으로 과잉입식이 사전에 방지되었지만, 분양수수 제한으로 판매가격이 인상되어 가격 부담으로 노계군의 생산연장과 강제환우계군이 증가하는 단점을 초래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에따라 쿼터제 지속 시행여부에 대해 위원장을 포함한 대표위원에게 의사결정권을 위임하였다.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 행동지침 개정안 제출

본회는 시방역실시요령 및 SOP개정과 관련하여 살처분 범위 축소와 백신비용 정책, 보상규정 삽입 등을 골자로한 개정내용을 농림부에 제출하였다(표1, 168페이지 참조). 또한 시전담기구 설치 및 인원보강, 저병원성 시백신 보급 일원화 등도 함께 건의하였다.

## 종계부화분과위원회 2007년 사업계획 논의



지난 14일 본회 회의실에서는 종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언중)가 개최되었다. 1월 육용종계 입식수수는 344,800수로 전년동월대비 16.3%가 증가되었다.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으로 종계DB구축사업 외 가금티푸스 청정화방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 종계육성계사 시설개선 지원을 위한 시책 건의, 백신미 생산시설 및 질병관리기준 강화를 위한 대정부 시책건의 등을 계획하였다.

또한 지난 회의에서 거론된 미등록종계에 대해서 해당관할 시·군청에 고발키로 결의한 내용을 법적 체계화가 자리 잡힐 수 있도록 건의 하자고 논의되었다. 신임분과위원으로 서정준 사장(한신부화장), 김종득 사장(광천종계장), 최부한 사장(능산종계장), 안태엽 사장(정우축산), 한형석 대표(마니커), 김용운 사장(대양농장)으로 조정되었다.

## 육계분과위원회 AI관련 현안 논의

지난 22일 본회 회의실에서는 정기총회에 앞서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장재성)가 개최되었



다. 1월 육용종계 입식수수는 345천수로 전년동월대비 16.5% 증가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신임분과위원으로 김명기 지부장(파주), 차영하 지부장(보은), 허창행 지부장(서천), 송영대 지부장(홍성), 이홍재 지부장(당진) 외 서종원 사장(솔길농장), 이흥규 사장으로 조정되었다.

또한 지난 2월 9일 안성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과 관련하여 시상황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날 열린 정기총회와 관련하여 논의될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지부 · 지회소식)

## 대한양계협회 김포강화 채란지부 지부장 이·취임식 거행



김포강화 채란지부(지부장 이효재)는 지난 8일 김포시 통진면 소재 대림부페에서 각계인사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이효재 지부장은 그동안 김포강화지역의 양계발전을 위해 3년동안 노력해온 임재룡 전 지부장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김포지역 양계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쓸 것을 약속하였다. 이 자리에는 본회 김선웅 채란분과위원장, 이종길 전무를 비롯한 오정길 한국양계농협 조합장, 최흥근 한국계란유통협회장, 임한호 김포축협조합장, 신광식 경기도의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 포천채란지부

#### 지부장 이·취임식 거행



포천채란지부(지부장 김인배)는 지난 8일 포천시 영북면 소재 지부사무실에서 포천축협 양기원 조합장을 비롯해 회원 및 관련업계 관계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신임 김인배 지부장은 “오세를 지부장을 비롯해 전임 집행부가 포천채란지부를 한층 발전시켰다”며 “앞으로 포천채란지부가 명실 공히 전국 최고의 지부로 거듭나기 위해 회원 공동사업을 한층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읍시지부

#### 지부장 이·취임식 개최, 강서운 신임 지부장 선출

정읍시지부는 지난 13일 정읍시 임페리얼웨딩



홀에서 제4·5대 지부장 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서운 신임 지부장이 선출되었고, 정해년 새해를 맞아 앞으로 정읍 지역의 양계산업이 보다 발전하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 설 것을 다짐하였다.

### 파주육계지부

#### 김명기 신임 지부장 선출

파주육계지부는 2월 1일 김명기 신임 지부장을 선출하였다.

지부장 : 김명기  
부지부장 : 김경래, 윤중서  
총무 겸 감사 : 김종철



▲ 김명기 지부장

### 안성채란지부

#### 한기석 신임 지부장 선출

안성채란지부는 지난 1월 15일 한기석 신임 지부장을 선출하였다.

지부장 : 한기석  
부지부장 : 최종섭  
총무: 김기철



▲ 한기석 지부장

## 제주도지회 한라양계조합 계란등급판정 지정업체선정

제주지회(지회장 영광근)가 중심이 되어 제주도내 계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출하하고 있는 제주한라양계영농조합법인(이하 한라양계조합)이 축산물등급판정소로부터 계란등급판정 지정업체로 선정됐다.

계란등급판정 업체로 지정됨에 따라 농가 수집→선별→세척과 코팅→등급판정(외관검사와 내용물 검사를 거쳐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일자표시)→등급별 포장공정을 거쳐 계란의 품질과 신선도를 확실하게 보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라양계조합은 지난 21일부터 등급판정 계란판매를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제주의 건강하고 젊은 닭이 생산한 계란이 청정 고품질로 인정을 받아, 전국 시장으로 판로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미 한라양계조합은 전국 급식학교에 하루 1천판(3만개)을 납품하기 위해 전국적인 유통업체와 판매 예약을 마쳤으며, 하나로클럽·백화점·대형 마트 등과도 납품을 추진 중에 있다.

한라양계조합과 제주도 당국은 계란등급판정의 공정성과 과학성 확보에 조금이라도 금이 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주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연기채란지부 사무실 이전 및 전화번호 변경

연기채란지부(지부장 김흥구)는 지부활성화 및

사업 번창을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주소 : 충남 연기군 소정면 대곡리 322-6

전화 : 041-562-0953

팩스 : 041-562-6466

### 회장동정



◀ 최준구 회장

- 1.23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임원 이·취임식
- 1.24 농업전망 2007 발표대회
- 1.25 시 극복을 위한 양계산물 소비홍보 행사
- 1.25 07 축산박람회 대행사 선정 심사
- 1.26 한여농 임원 이·취임식
- 1.30 산란중계 및 산란계 대표자 회의
- 2.1 협회 회장단 회의 및 자체감사
- 2.5 2월 채란분과위원회
- 2.5 농특위 농민단체장 간담회
- 2.9 07 본회 제1회 이사회
- 2.14 2월 종계부화분과위원회
- 2.15 수과원 간부직원과의 간담회
- 2.22 07 본회 정기총회
- 2.23 07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제1차 정기 이사회
- 2.23 2007 우수축산물브랜드 1차 인증위원회

표1.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 개정의견

제정(안)		수정(안)		사유
<p><b>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b></p> <p>제4장 환축 발생시 방역요령 제17조(살처분 등) ①시장·군수는 ——(중략)—— 검역원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살처분 또는 폐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시행하여야 한다.</p> <p>②검역원장은 발생농장 ——(중략)—— 축사를 중심으로 반경 3킬로미터 내외의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축성 동물의 살처분 및 그 생산물의 폐기를 확대하여 실시할 것을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p> <p>신설</p>		<p><b>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b></p> <p>제4장 환축 발생시 방역요령 제17조(살처분 등) ①시장·군수는 ——(중략)—— 검역원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살처분, 예방접종 또는 폐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②검역원장은 발생농장 ——(중략)—— 축사를 중심으로 이동제한 지역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금류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p> <p>⑧소규모의 닭과 오리 를 사용하는 곳에서 HPAI가 발생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감염 계군만을 살처분하고 500m까지 살처분 범위의 확대가 필요할 경우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수 있다.</p>		<p>-방역대책에서 예방접종을 살처분 방역정책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안으로 언급한 것처럼, 예방접종에 대한 규정을 넣어 효과적인 방역정책추진.</p> <p>-발생농장으로부터 500m까지의 살처분은 쥐, 개 및 고양이 등 매개체의 활동범위 등을 감안할 때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3km까지 확대하는 것은 외국사례를 볼 때 어느 규정에도 없음. 일본은 발생농장만 살처분함.</p> <p>- 소규모 닭과 오리 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농가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함.</p>
<p><b>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b></p> <p>제1장 조류인플루엔자(A)란? VII. 방역대책 초동방역이 실패하여 HPAI가 전국적으로 확산 또는 만연되거나 ——(중략)—— 경우 예방접종을 살처분 박멸정책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모두가 위의 범주에 속하는 국가이다.</p> <p>표 1. 국제수역사무국(이)E 지정 List A 전염병 : 15종</p>		<p><b>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b></p> <p>제1장 조류인플루엔자(A)란? VII. 방역대책 초동방역이 ——(중략)—— 수 있으며, 국내에서 같은 사태가 예상되거나 발생될 경우 방역대책회의를 거쳐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p> <p>표1. ——(중략)——</p>		<p>-HPAI의 전국확산으로 방역에 한계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방접종(백신) 등에 대한 별도 방침 필요.</p> <p>-정부에서 이미 H5백신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정부의 백신 시행 의지가 필요함.</p>
<p>질병명</p>	<p>가축성동물</p>	<p>국내발생여부</p>	<p>——</p>	<p>-시명칭 통일</p>
<p>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p>	<p>조류</p>	<p>발생</p>	<p>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p>	<p>——</p>
<p>제2장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별 긴급조치사항</p> <p>발생상황</p>		<p>제2장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별 긴급조치사항</p> <p>발생상황</p>		<p>- 언론사들이 질병전파의 매개체 역할</p> <p>- 발생사실을 언론에 공표하여 알리는 동시에 행동지침이 담긴 농림부 장관의 담화문을 시달할 경우 지자체 등에서 보다 체계적인 방역활동에 큰 도움</p> <p>- 시가 지속적으로 발병할 경우 백신접종에 대비한 준비 필요.</p> <p>- 일본은 기본지침에 백신사용에 대해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을 하고 있음.</p>
<p>III. 발생확인상황</p> <p>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확인시</p>	<p>기관명</p> <p>농림부</p>	<p>긴급조치상황</p> <p>신설</p>	<p>III. 발생확인상황</p> <p>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확인시</p> <p>기관명</p> <p>농림부</p> <p>■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사실 보도 자료 배포 및 경계지역 내 언론사 출입 금지</p> <p>■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농림부장관 담화문 발표</p>	
<p>IV. 발생확산상황</p> <p>초기발생 이외의 지역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경우</p>	<p>기관명</p> <p>농림부</p>	<p>■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수정·보완</p> <p>-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살처분 확대여부 결정 등</p>	<p>IV. 발생확산상황</p> <p>초기발생 ——(중략)——</p> <p>■ 조류인플루엔자 ——(중략)——</p> <p>-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살처분 확대 및 예방접종 여부 결정 등</p>	
<p>제4장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요령</p> <p>3. 발생확인시 긴급조치사항</p> <p>1. 농림부장관의 조치사항</p> <p>1.2,3 살처분·이동제한 등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p> <p>신설</p>		<p>제4장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요령</p> <p>3. 발생확인시 긴급조치사항</p> <p>1. 농림부장관의 조치사항</p> <p>1.2,3 살처분·이동제한 및 이동제한지역의 가금산물 가격하락 등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방역대책으로 ——(중략)——수립·시행한다.</p> <p>신설</p>		<p>-시발생으로 인해 농가들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계산업을 조기에 회복시키고자 함.</p>
<p>신설</p>		<p>제5장 농가지원대책</p> <p>1. 살처분 보상</p> <p>1.1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오염지역 등 살처분을 실시한 축종에 대해 가격을 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p> <p>1.2 살처분 가축에 대해서는 일령, 월령별로 산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p> <p>1.3 살처분에 따른 영업손실 비용은 추가로 산정하여 지원한다.</p> <p>2. 농가수매</p> <p>2.1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지역내의 가금산물에 대해서 우선 수매, 적정 보상비를 지급한다.</p> <p>2.2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소비감소에 따른 가금산물 가격이 큰폭 하락(발생전 보다 20% 이상)할 경우 가금산업 안정화를 위해 이동제한 외 지역에 대해 정부는 즉각 수매를 실시한다.</p> <p>2.3 보상비 지급기준은 생산물(알, 닭, 오리)에 대해 최초 발생전 일주일까지의 평균 산물가격 또는 정부가 발표한 생산비중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여 산정한다.</p> <p>3. 셋게지원비</p> <p>3.1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제한 조치를 받은 오염, 경계지역내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입식시점까지의 피해정도를 파악해 셋게비를 지원토록 한다.</p> <p>3.2 가격하락으로 가금산업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전국의 가금관련 농가에 대해 경영자금 상환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해 농가 보호에 앞장선다.</p>		<p>- 시발생시 살처분 및 가격 하락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가금농가에 대해 피해액을 산정해 살처분 보상비 또는 수매를 실시하여 피해를 신속히 보전코자함.</p>